

충청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호식

충청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송미애 의원 등 7인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8년 11월 21일

○ 회부일자 : 2018년 11월 23일

3. 제안이유

○ 충청북도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에게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 국어발전 시행계획 수립 및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 설치
(안 제5조~6조)

○ 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공공기관의 이름, 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안 제13조~제15조)

○ 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안 제17조)

○ 한글날 기념행사, 지역어 보전 (안 제18조~19조)

○ 교육 및 포상 (안 제22조~23조)

- 도 소속 공무원 또는 도민 등의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실시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에게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 안 제2조에서는 “국어”, “한글”, “어문규범”, “공문서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음.
- 안 제5조에서는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5년마다 국어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를 두며,
- 안 제13조에서 15조에서는 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공공기관의 이름, 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에 대해 규정하였음.
- 안 제17조에서는 도에서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도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를 위해서 도 본청 문화담당 부서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였음.
- 안 제19조에서는 도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충청북도 지역어의 보전과 발전을 위한 내용을 규정하였음.

-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2월 14일 현재 6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음.
- 언어는 사회성이 있으므로 국어도 사회가 변화할수록 신조어가 탄생하고 외래어가 유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필연적이나, 국어는 대한민국 국민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임. 그런데 공공기관이 적절하게 표현할 국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으로 외국어나 외래어를 공문서 등에 사용하는 것은 주민과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고 사회갈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
- 최근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실질적 자치권이 확대되는 추세인데 올바른 국어 사용과 더불어 충청북도 지역어의 보존을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붙임: 충청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끝.